

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5의3] <신설 2020. 3. 18.>  
공사계획의 신고대상(제49조의2제2항 관련)

1. 제조소

가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

- 1)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
- 2) 가스압축기

나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

- 1)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
- 2)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

2.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

가. 배관

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미만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.

- 1) 호칭지름이 50mm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
- 2)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

나. 정압기

- 1) 배관공사(최고사용압력이 0.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·증설·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)
- 2)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